

선거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농공학회 (이하 “학회”라 한다)의 회장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장 선거에 관하여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023. 07. 18 개정)

제3조(임 기) ① 회장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단, 제3항의 보궐선거에 의한 임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장의 임기는 다음연도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2023. 07. 18 개정)

③ 재임기간 중 궐위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보궐선거를 할 경우 회장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전임 회장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회장은 선거사무를 통괄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정회원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3. 07. 18 개정)

제 2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5조(선거권) 제9조의 선거인 명부 작성일 현재 회원은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권이 있다. 다만,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최근 3년간 회비를 연이어 체납한 회원은 선거권이 없다. (2023. 07. 18 개정)

제6조(피선거권) ①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현재 15년 이상 학회활동을 하면서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은 피 선거권이 있다.

② 제1항의 규정과 별도로 이사회의 결정으로 학회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회 관련 주무관서의 국장급 이상 또는 단체회원의 장에게 피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2023. 07. 18 개정)

③ 선거인 명부 작성일 현재 전년도 말까지 최근 3년간 회비를 연이어 체납한 정회원은 피 선거권이 없다.

제 3 장 선거기간 및 선거일

제7조(선거기간) 선거기간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 등록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8조(선거일) 선거일은 투표마감일로서 회장 임기 만료일 60일 이전 회장이 지정한일로 한다.

제 4 장 선거인 명부

제9조(명부작성) ① 선거인 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후보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2023. 07. 18 개정)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후 7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2023. 07. 18 개정)

제10조(명부작성의 확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착오, 누락,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한다. (2023. 07. 18 개정)

제 5 장 후보자 등록 및 사퇴

제11조(후보자 신청)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위한 등록 구비서류, 신청기간 및 선거일정 등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후보자 추천) 후보자 추천은 소정의 추천서에 의거 선거권이 있는 정회원 20인 이상 연명으로 하며, 피 추천자의 후보자 수락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2023. 07. 18 개정)

제13조(후보자 등록)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서와 수락서를 포함한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후보자등록 신청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3. 07. 18 개정)

제14조(후보자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신청이 마감된 때에는 등록신청 접수순에 의거 후보자의 정보를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후보자의 사퇴) ① 복수의 후보자가 등록 또는 공고된 상태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사퇴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도록 한다.

② 후보자 사퇴에 의하여 1인 후보자만 남은 경우에는 단독후보자로 간주하고, 제18조 1항 규정에 의거한다.

제 6 장 투 표

제16조(투표방법) ① 투표는 전자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1인 1표로 한다. (2023. 07. 18 개정)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시기 및 절차를 선거일 10일전까지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2023. 07. 18 신설)

제 7 장 개 표

제17조(개표 개시)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 실시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기관의 개표결과를 확인한다. (2023. 07. 18 개정)

제 8 장 당 선 자

제18조(당선자의 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3조와 제15조 2항 규정에 의거 등록한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투표절차 없이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표 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제19조(당선자의 통지 및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조에 의하여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해당자에게 당선을 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와 학회지에 당선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3. 07. 18 개정)

제20조(선거결과 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결정 등 일련의 선거과정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3. 07. 18 개정)

제 9 장 보 칙

제21조(선거일 조정) ① 회장은 학회의 업무형편이나 여건변화에 따라 상기에서 규정한 선거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선거일정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23. 07. 18 신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1996년 12월 14일

개 정 2004년 4월 24일

개 정 2008년 7월 5일

개 정 2013년 1월 17일

개 정 2013년 10월 30일

개 정 2023년 7월 18일